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 1 조 명칭 및 성격

본 학교는 콜럼버스 한국학교 (영문 : The Korean-American Community School of Central Ohio, 영문 약칭 : KACSCO)라 칭하며 비 영리 단체로 운영한다.  
(이하 본교 라 칭한다.)

### 제 2 조 소재지

본교는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 지역(Columbus, OHIO) 혹은 인근 지역에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분교를 설립할 수 있다.

### 제 3 조 목적

본교는 복합문화를 표방 하는 미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한인 자녀 및 모든 사람에게 종교, 성별, 나이 및 인종에 차별 없이 한국어 교육과 한국 고유문화를 알리어 한미 상호문화 교류와 이해증진에 기여함을 설립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 장 조 직

### 제 4 조 기관

본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을 둔다.

#### 1. 이사회

본교의 운영발전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제반규정의 심의를 주 임무로 한다. 본교의 이사회에는 이사장단과 상임 이사회를 두어 전반적인 재정 운영 및 규정에 최종 심의를 전담하게 한다.

#### 2. 행정 위원회

본교를 대표하며 교육의 방침, 운영 및 집행의 책임을 진다.

#### 3. 명예 이사회 (Emeritus Director)

본교의 전임이사로 구성되며 자문의 역할을 한다.

#### 4. 육성회

본교의 발전을 위하여 학교와 학부모간의 긴밀한 대화와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학교운영을 지원한다.

### 제 3 장 이 사 회

#### 제 5 조 이 사

1. 자격 : 이사는 본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을 지지하는 지역인사로서 본교발전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이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.
2. 선출 : 본교 이사 3명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 출석인원 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된다. 전임교장은 임기 만료 후 본인의 동의 하에 이사회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 이사가 된다.
3. 임기 및 인원 : 이사의 임기와 이사의 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 단 본교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이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당 이사의 사퇴 권고 혹은 제명할 수 있다.

#### 제 6 조 이사회의 직무

1. 본교의 재정보호 와 자산관리
2. 본교의 교장 및 교감의 임명
3. 본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심의 의결
4. 본교의 교육활동 보고서 및 결산 보고서의 승인
5. 본교 정관의 제정 및 개정
6. 기타 중요 안건의 심의 의결

#### 제 7 조 이사회의 소집

1. 정기 이사회 : 매년 2회 이사장이 소집한다.
2. 임시 이사회 :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.
3. 이사회의 성립 :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.
4. 대리출석권한 : 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에는 이사의 배우자(부인 혹은 남편)에 한하여 대리 출석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정족수에 출석으로 간주한다.

## 제 8 조 이사장단의 선출방법과 기능

이사회의 유기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기 2년 의 이사장, 부 이사장 및 감사로 구성되는 이사장단을 두며 이사장단의 선출방법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### 1. 선출방법

가. 이사장 : 이사회의 추천을 얻은 이사장 후보를 대상으로(현 이사진에서 선출) 정기 이사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다수표를 획득한 자를 당선자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.

나. 부 이사장 : 당선된 이사장이 지명하며 재임할 수 있다.

다. 감사 : 이사회의 추천을 얻은 감사 후보를 대상으로(현 이사진에서 선출) 정기 이사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다수표를 획득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.

### 2. 기능

가. 이사장 :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 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.

나. 부 이사장 :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.

다. 감사 : 본교 재정사항을 감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.

## 제 9 조 분과 위원회

이사장은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분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 위원장은 임기 1년 기한으로 이사장이 임명/재임명한다.

## 제 4 장 상 임 이 사 회

## 제 10 조 구 성

상임 이사회는 최소 3인으로 구성되며, 3인 이상으로 구성될 경우 최대 49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이사를 선임한다. 이사회 의 추천을 얻은 후보를 대상으로(현 이사진에서 선출) 정기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추천으로 선임한다. 이사장단은 당연직 상임 이사가 된다.

이사장은 상임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.

## 제 11 조 직 무

학교 재정 및 정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 행정 위원을 초청하여, 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다.

## 제 5 장 명 예 이 사 (Emeritus Director)

본교 전임이사로 구성되며 본교 운영의 자문 기관이다

## 제 6 장 행 정 위 원 회

### 제 12 조 구 성

행정 위원회는 교장, 교감, 책임교사로 구성되며, 교장은 행정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  
필요에 따라 해당 임직원 및 육성회장을 행정 위원회에 포함 시킬 수 있다.

1. 교장 : 본교를 대표하며 교육의 방침, 운영 및 집행의 책임자로서 이사회가 2년의 임기로 임명하며, 재임을 할 수 있다.  
교장의 중요임무는 다음과 같다.

가. 본교의 교육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.

나. 교직원의 임명 및 감독

다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2. 교감 :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회가 2년의 임기로 임명한다.

3. 기타 임직원 : 교장이 필요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.

### 제 13 조 직 무

본교의 집행 기관으로서 교육실무와 행정을 총괄한다.

## 제 7 장 육 성 회

### 제 14 조 육성회의 조직

본교 학부모로 구성되는 육성회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육성회장은 재임 기간 중 학교 운영을 위한 후원 활동에 참여한다.

## 제 8 장 재 정

### 제 14 조 재정

본교의 재정은 수업료, 찬조금, 정부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(이사회 보조금)으로 충당하며 재정관리는 재무관리 규정에 따라 교장의 책임하에 관리한다.

### 제 15 조 감사

교장은 매년 회계 연도 말까지 감사가 요구하는 모든 재정 자료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는 그 결과를 이사장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제 16 조 회계연도

본교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## 제 9 장 정관의 개정

### 제 17 조 정관의 개정

본교의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2/3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된 ‘정관 개정 분과 위원회’에 상정 통과된 후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고 상임이사회의 최종동의로 확정된다.

## 제 10 장 학교책임 한계사항

### 제 18 조 학생보호 책임

교장은 본교 학생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의 책임은 학부모에게 있고 본교는 학생들의 상해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음을 학부모에게 충분히 인식 시켜야 한다.

### 제 19 조 상 별

교장은 본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학생과 학부모, 교직원, 이사 및 일반 후원인사들에게 표창할 수 있으며 본교의 교육이념과 명예를 해친 교직원과 학생들에게는 응분의 징계를 할 수 있다. 교장은 상벌 사항을 이사회에 사전 보고 하여야 한다.

## 제 11 장 부 칙

#### 부칙 1 조 효력의 발생

본 정관은 통과되는 즉시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#### 부칙 2 조 관례 적용

본 정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거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거한다.

#### 부칙 3 조 업무관리 및 인수인계

이사장단의 업무 지속을 감안하여 모든 서류(감사 자료를 제외한 대외 공문 또는 이사회회의록)를 매년 6월 30일 까지 차기 이사장단에게 인계 한다.

# 재 무 관 리 규 정

## 제 1 장 목 적

제 1 조 본 재무 관리규정은(이하 규정이라 칭함) 콜럼버스 한국학교 예산의 조달, 관리, 집행, 회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칙적으로 처리키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한국학교 정관은 이 규정에 우선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편타당성 있는 이사회의 유권해석으로 처리하되 예산의 집행관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## 제 2 장 회계연도 및 예산의 승인과 집행

제 3 조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을 초일로 기산하며 매 학기를 기준으로 상, 하반기로 구분, 회계 처리한다.

제 4 조 교장은 매 학기 개학전에 운영계획서 및 예산계획서를 이사장(회)에게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.

제 5 조 조달된 모든 예산은 은행에 예치관리 하여야 하며 예산의 집행은 수표발행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6 조 예산의 모든 집행은 승인된 한도 내에서 교장의 책임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을 초과 할 시는 추가 운영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추가 예산을 승인 받아야 한다.

제 7 조 교장은 예산의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해당 은행의 제반 규정에 따라 수표발행의 권한을 교감/재정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 8 조 모든 경비는 지출과 동시 증빙서(영수증)를 첨부 하여야 한다.

제 9 조 증빙서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관계 해당인의 영수 확인서로 대응한다.